

■ 최신 법령 ■

[도산]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

배성진 변호사 | 배기완 변호사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595호로 일부 개정되었고, **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**입니다.

개정 법률은 주식회사가 채무초과인 경우 의무적 주식소각제를 폐지하여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식소각 여부를 결정하게 했으며, 직장인·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채무자의 근무지나 사무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절차의 재판관할을 인정했습니다. 그 밖에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·동해시·삼척시·속초시·양양군·고성군인 경우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부여했습니다.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주요 내용

- (1)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·동해시·삼척시·속초시·양양군·고성군인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(제3조 제9항 신설)
- (2)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(제3조 및 제4조)
- (3) 법률 개정·폐지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, 폐지된 「증권거래법」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을 인용하도록 수정(제62조, 제261조, 제271조 및 제272조)

- (4)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「방위사업법」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·해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함(제119조 및 제335조).
- (5)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를 공익채권 및 파산채권이 되는 청구권으로 인정(제179조 및 제473조)
- (6) **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초과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무적 주식소각제 폐지(제205조)**
- (7) 기재오류에 대하여 책임 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게 함(제589조 및 제589조의2).
- (8)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취득한 자가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함(제609조의2).

2. 다운로드 :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」